

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 (Durations) 2일(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경우 6시간)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성명 (대표자)	국적
	주소		
	(소재지) (전화:)		
항공기 등록부호·형식 및 식별 부호			
항행의 경로[기항지(寄航地)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] 및 일시			
이륙·착륙하려는 국내 비행장등의 명칭·위치 및 그 일시			
항행의 목적			
운항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			
여객의 성명·국적 및 여행의 목적			
화물의 명세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4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유의사항				
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				
1.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				
2.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				
3. 환자의 이송				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				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국토교통부 (국제항공 담당부서) 또는 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→ 선람·검토 국토교통부 (국제항공 담당부서) 또는 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→ 결재 국토교통부 (국제항공 담당부서) 또는 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→ 통지서수령 신청인